

#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oreign Trade ACT between Korea and China

김창봉(Chang-Bong Kim)\*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홍길종(Gil-Jong Hong)

중앙대학교 동북아블류슈통연연구소 전임연구원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V. 결 론   |
| II. 한-중 통상현황 및 향후전망       | 참고문헌     |
| III.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 Abstract |
| IV.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          |

## Abstract

China is our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and the biggest country of our investment. For this reason, the Korea active strategy for coping with China's changes is very critical at the current point in time due to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dependent on exports.

This essay is aimed at studying the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System of China and selecting Korea's prospective exports-imports to Chin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help Korean trading corporatio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mot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 China, Trade Act, Chinese Trade Law

\* 주저자임.

## I. 문제의 제기

21세기의 국제통상환경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으로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출현시켰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무역관리제도는 한층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며 더욱 더 개방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2004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자체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세계시장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됨으로써 한국 기업에 위협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對中 수출증가와 수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한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관련 여러 가지 규범은 중국의 무역구조에 영향을 주는 한편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무역규범과 한국의 수출입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역규범은 한국 기업들에게 국내법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대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관련 제도의 이해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리제도를 일반적 원칙과 주체에 대한관리, 객체에 대한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에 존재하는 무역관리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을 수립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학자들의 각종 연구서적과 논문, 그리고 국제경제기구나 동북아 국가의 관련부처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을 토대로 연구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II. 한·중 통상현황 및 향후전망

### 1. 한·중 무역동향 및 추이

수교이전 중국의 對한국 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89년 기준)도 되지 않았으나

1992년 수교이후 12년간 韓·中 양국간 무역은 연 평균 20.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04년 상반기 현재 한국은 중국(홍콩제외)의 수출, 수입, 총 무역규모 등에서 3위로 부상하였다.

〈표 1〉 한·중 무역동향 및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입	비중
1989년	4.72	0.9	4.24	0.7	8.96	0.8
1990년	12.60	2.0	6.83	1.3	19.43	1.7
1991년	21.79	3.0	10.66	1.7	32.45	2.4
1992년	24.37	2.9	26.23	3.3	50.60	3.1
1993년	28.60	3.1	53.60	5.2	82.20	4.2
1994년	44.02	3.6	73.19	6.3	117.21	5.0
1995년	66.88	4.5	102.93	7.8	169.81	6.0
1996년	75.11	5.0	124.81	9.0	199.92	6.9
1997년	91.16	5.0	149.29	10.5	240.45	7.4
1998년	62.52	3.4	150.14	10.7	212.66	6.6
1999년	78.08	4.0	172.26	10.4	250.34	6.9
2000년	112.92	4.5	232.07	10.3	344.99	7.3
2001년	125.19	4.7	233.77	9.6	358.96	7.0
2002년	155.35	4.8	285.68	9.7	441.03	7.1
2003년	200.96	4.6	431.35	10.4	632.31	7.4
2004년 1-6	121.42	4.7	291.91	11.0	413.30	7.9

자료 : 중국해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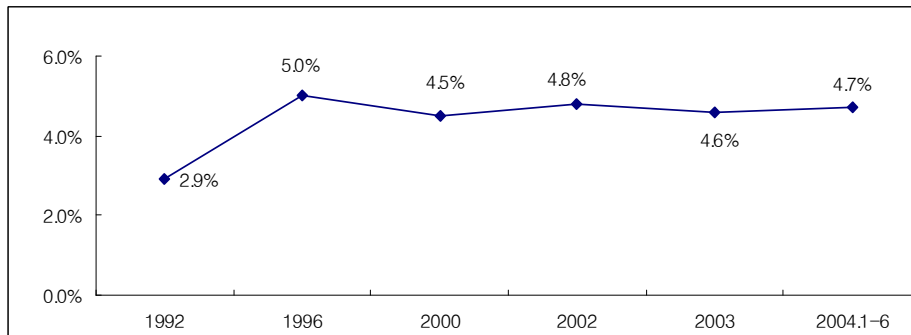
韓·中 양국의 무역은 양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韓·中 양국간 무역품목이 고부가가치화, 다원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으로 대외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한중간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으로 중국의 무역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대 균형으로 발전시켜 한중 양국간에 호혜적인 무역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2. 중국의 對한국 수출현황

### 1) 중국의 對한국 수출비중 추이

중국의 對한국 수출은 1992년 수교 이후부터 1996년까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높아졌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對한국 수출이 둔화되어 2000년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여 4.5%까지 떨어졌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이 균형적으로 늘어나면서 對한국 수출은 현재까지 줄곧 4%대에 머물고 있으며, 당분간 이와 같은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2〉 중국의 對한국수출비중 추이



자료 : 중국해관

## 2) 중국의 對한국 수출상품 구조

2004년 상반기 중 중국의 對한국 20대 수출품목 가운데 전기제품(302.7억 달러)이 제1위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상품은 모두 금속류로 동(147.5%)과 철강(120.4%)이다. 중국의 對한국 수출에서 화공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20대 품목에서 유기 화약품(26.3억 달러), 무기 화약품(18.6억 달러), 인조단섬유(14.4억 달러), 플라스틱(12.7억 달러) 등 4개에 달한다. 20대 품목 중 곡물(-49.7%), 면(-9.4%)등 농산품이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1〉 중국 對한국 20대 수출품목(2004년 1-6월)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1	전기기기	3,027	81.5	11	철강의 제품	203	38.9
2	원자로 및 보일러	1,328	93.8	12	무기 화약품	186	28.1
3	철강	841	120.4	13	곡물	181	-49.7
4	광물섬유	712	10.8	14	철도, 궤도 전차	163	1.6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5	메리야스	583	17.8	15	면	145	-9.4
6	의류	583	16.8	16	인조단섬유	144	1.4
7	어류	334	15.3	17	신발류	142	18.9
8	알루미늄	296	25.3	18	플라스틱	127	65.3
9	광학기기	287	21.4	19	동과 그 제품	126	147.5
10	유기 화합품	263	1.9	20	목재 및 목탄	120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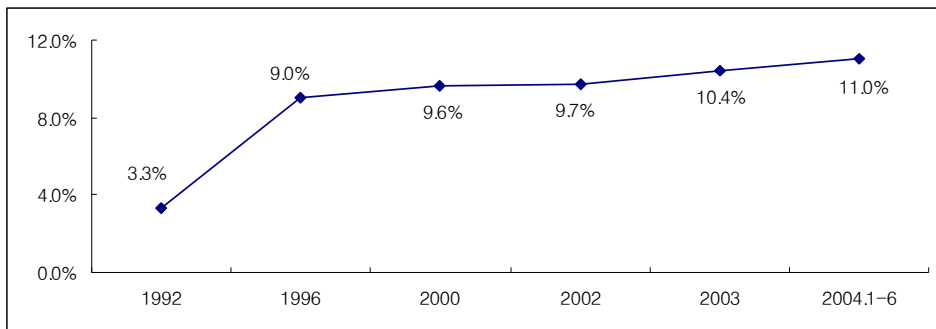
주) 품목분류는 HS 2단위 기준  
 자료 : 중국해관

### 3. 중국의 對한국 수입현황

#### 1) 중국의 對한국 수입비중 추이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수교이후부터 1996년까지 9.0%로 빠르게 높아졌다. 1997년에 두 자리수에 진입한 이후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10-11%선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2004년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11%를 기록, 한국비중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3〉 중국의 對한 수입비중 추이



자료 : 중국해관

#### 2) 중국의 對한국 수입상품 구조

2004년 1-6월 중 중국의 對한국 20대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가 82.6억 달러로 제1위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상품의 순위로는 광학기기(192.5%), 자동차부품(115.4%)이었다.

〈표 4〉 중국의 對한국 2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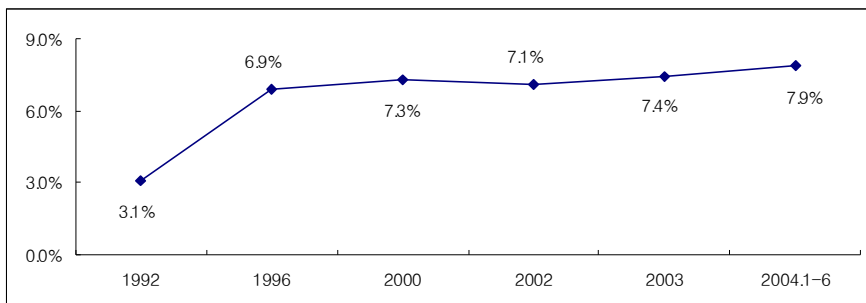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1	전기기기	8,257	43.9	11	원피와 가죽	303	-0.2
2	광학기기	4,575	192.5	12	철강의 제품	286	73.9
3	원자로, 보일러	3,406	60.2	13	판지와 그 제품	275	10.1
4	플라스틱	2,191	40.3	14	인조단섬유	271	8.9
5	유기 화학품	2,172	50.7	15	알루미늄	257	63.2
6	철강	2,008	38.4	16	메리야스 편물	249	7.5
7	광물섬유	1,425	51.8	17	고무와 그 제품	163	41.5
8	자동차 부품	810	115.4	18	화학공업생산품	154	28.4
9	인조장섬유	389	1.5	19	방직용 섬유제품	152	7.4
10	동과 그 제품	388	41.2	20	채소 및 견과류	148	16.6

주) 품목분류는 HS 2단위 기준  
 자료 : 중국해관

#### 4. 수출입비중 변화

중국의 對한국 무역액이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교전인1989년에 0.8%로부터 1996년 7%에 바짝 다가선데 이어 지속적으로 7%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무역액이 국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한국과의 높은 수출입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4〉 對한 수출입 비중의 추이



자료 : 중국해관

### Ⅲ.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 1.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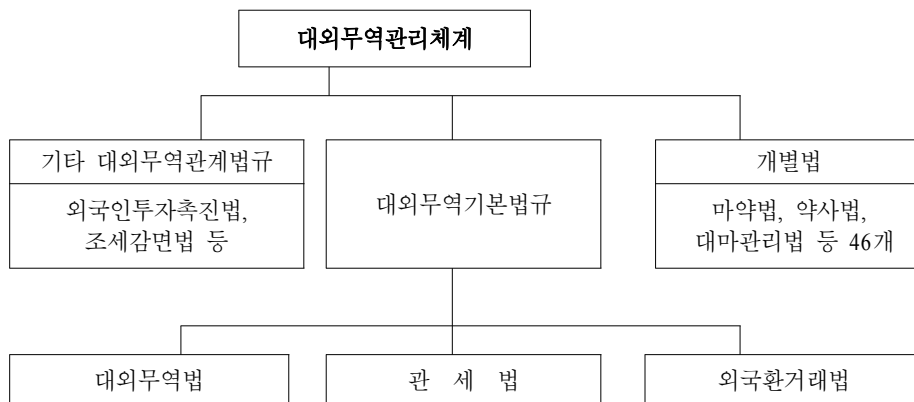
##### 1) 대외무역의 관리체계

한국에서 대외무역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수출입통관과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법, 그리고 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외에 수출보험법, 중재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sup>2)</sup>

또한 이러한 법규 이외에도 간접적인 무역관리법규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무역관련 46개 개별행정법들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의 본래의 제정목적은 대부분 국민보건·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 다양하며, 해당 품목의 무역거래가 그 법의 본래의 목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품목의 무역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들은 간접적인 무역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법규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규는 수출입절차와 거래과정 및 수출입물품의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이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기본법으로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각종 고시·공고 등이 있으며 대외무역의 일반법이며,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기본법이다.

<표 5> 한국의 대외무역관리체계



2) 도중권·라공우, 「최신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4, p.25.

3) 김병학·홍길중, 「대외무역과 전자무역 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4, p.37.

## 2) 대외무역관리기관

한국에서는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 무역, 광업, 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sup>4)</sup>”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자원부이다.

또한 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행정의 신속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의 장,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up>5)</sup>

## 3) 대외무역주체에 대한 관리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주체에 관한 것은 누가 어떻게 무역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요한 범위이다. 한국의 무역업관리제도는 1993년 6월 30일까지는 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1993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신고제로 변경·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1일부터는 무역업관리의 형태가 신고제에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개념도 삭제되었다. 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든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개별행정법에 의하여 인간의 건강, 안전, 환경, 안보, 공서양속 등 경제외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개별행정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만이 할 수 있다.

## 4) 대외무역객체에 대한 관리

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sup>7)</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규정이 유형적인 물품에 대한 관리를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sup>8)</sup>

4) 정부조직법 제37조.

5) 대외무역법 제53조 ①항.

6) 김성훈, 「무역창업시뮬레이션」, 도서출판 두남, 1999, p.25.

7) 대외무역법 제2조 1호.



이러한 수출입이 제한/금지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승인을 얻어서 수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입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5) 대외무역법의 적용지역

한국의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내라는 용어로 추정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sup>9)</sup>까지를 적용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sup>10)</sup>는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 2.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중국은 한국의 국회라 할 수 있는 全人代 常務委員會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원에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또한 한국의 시행세칙은 구체적 집행기관인 對外貿易經濟合作部에서 규장이라는 부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sup>11)</sup>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는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된다.<sup>12)</sup>

중국은 1994년 이후 대외무역이 급속히 발전하여, 1994년 2,366.21억 달러에 그쳤던 대외 무역총액이 2003년에는 8,512.1억 달러로 급증해 세계 제4위로 꺾충 뛰어올랐다. 이처럼 중국의 시장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중국은 WTO협정에서 ‘무역권’에 대해, 모든 외국인 개인과 기업에 중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약 외국인 개인(자연인)이 중국에서 대외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중국인 개인(자연인)도 당연히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기술무역과 국제 서비스무역, 국경 무역업에서 볼 때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이 이미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대외경영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자유화의 조류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새로운 대외 무역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4년 7월 1일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을 분석하여 본다.

### 1)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 (1)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

중국은 지방정부에 분산되었던 무역시책을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에

8) 대외무역법 제14조 ①항.

9)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1호.

10) 헌법 제3조.

11) 徐海寧·田春華 等, 「中國對外貿易」, 世界圖書出版公司, 1998, p.71.

12) 강용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법체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222.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대외무역의 지도권과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외적인 협상이나 통상정책의 수립에도 일관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무역관련 법규를 통일하고 국제무역규범에 접근시키려는 의도에서 규정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2)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법 제4조 후반에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평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한다”고 규정하여 국영무역체제를 벗어나 사영무역기업들에게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공평한 무역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의 수호에 관한 규정은 제6장 대외무역질서와 제10장의 법률책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역상대국에 대해 규제를 행함에 WTO의 규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규칙, 반덤핑규칙, 반보조금규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3) 대외무역발전의 권장

중국은 대외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국가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권장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를 구축·개선하며, 대외무역 발전기금, 위험기금을 설립한다.<sup>13)</sup>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촉진의 기타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sup>14)</sup>

또한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협회, 상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역관련 생산, 판매, 정보, 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과 자율역할을 발휘하며, 법에 따라 대외무역 구제조치관련 신청을 하며,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며, 정부 관련부처에 대외무역 관련 건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촉진 활동을 수행한다. 중국 국제무역 촉진조직은 정관에 의해 대외연락, 전람회 개최,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및 기타 대외무역촉진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 및 촉진하며,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 촉진한다.

### (4) 국제규범 준수 및 호혜평등 원칙

대외관계에서는 호혜평등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후진국, 정치체계를

13) 대외무역법 제52조.

14) 대외무역법 제53조.

불문하고 국제적인 무역관계에서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중국이 체결·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의 기초를 보편적 국제규범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초에 따라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2001년 11월에 정식가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국가지역이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하여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제·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대외무역관리 기관

무역관리의 주무기관으로 국무원의 상무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sup>15)</sup>.

집행기관인 상무부와 별도로 무역·경제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무역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립 운영을 관리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있다. 무역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하여야 한다<sup>16)</sup>.

또한 개혁개방의 확대에 따라 무역관리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관함에 따라 각 지방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해당지역의 무역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대외무역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농업부 등 기타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무역관리기관을 정책과 역할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6> 중국의 무역정책 결정과 추진

구 분	실행기구와 역할
정책결정	·국가계획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정책입안 ·상무부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협상
쿼터배정 및 수출입허가증 발급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경제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주요산품의 수출입쿼터를 배정 ·국가기전산품수출입관공실은 주요기계와 전자산품의 수출입을 관리 ·재외무역경제합작부는 수출입허가증을 발급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국무원에 속한 관세세칙위원회는 세칙을 제정 ·해관총서와 상무부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무역체제의 관리
무역권한	·상무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무역권한을 부여 ·일반적으로 대외무역공사는 국가가 지정한 특정 무역공사가 다루는 소수의 주요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수출입업무 수행
외환관리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정책의 집행을 담당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에 대해 관리/감독

15) 대외무역법 제3조.

16) 대외무역법 제9조.

### 3)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의 주체로서 대외무역경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sup>17)</sup>. 과거 개인에게 대외무역경영을 할 수 없게 하였던 부분을 2004년 개정시에 개인에게 대외무역경영권을 부여하여 상무부와 지방대외무역 주관부문에 등기한 후 국경무역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을 수출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이라도 반드시 공상국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sup>18)</sup>.

또한 대외무역경영자는 상품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sup>19)</sup>. 이는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 사업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고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sup>20)</sup>고 규정함으로써 무역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 4) 대외무역관리의 객체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말한다<sup>21)</sup>고 규정함으로써 상품과 기술 그리고 서비스까지 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과 서비스까지 대외무역법의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외무역법이 우리나라와 같이 유형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관리법이 아니라 대외경제에 총체적인 관리법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2)</sup>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법률과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up>23)</sup> 이 경우 제한방법은 주로 수출입허가증 발급이나 쿼터 등을 통해 관리한다.

### 5) 적용지역

중국 대외무역법의 적용지역은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은 중국의 정세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서도 독립행정구역인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여 제68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단독관세지역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독관세지역은 WTO에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제지역들이다.

17) 대외무역법 제8조.

18)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중국의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제도”, 「KITA 지역경제연구」, 2004.12, p.62.

19) 대외무역법 제9조.

20) 대외무역법 제12조.

21) 대외무역법 제2조.

22) 강용찬, 전제논문, p.228.

23) 대외무역법 제14조.

## IV.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은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무역규범의 동반자의 대열에 들어섰다. WTO의 가입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법규·제도의 정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대외무역법의 개정이다. 이렇듯 개정된 중국의 대외무역에 의한 무역관리체제와 한국의 무역관리체제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표 7〉 한·중 무역관리제도의 비교

내용	한국	중국
무역관리 기관	산업자원부	상무부
권한의 위임·위탁 관리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주체에 대한 관리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제도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제
객체에 대한 관리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상품, 기술, 서비스
무역지원	관세환급, 각종 협회의 지원활동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명시	기금마련,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세금, 각종 협회의 지원활동 등을 지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첫째,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은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대외무역법 시행을 위한 일괄적인 시행규정이 없고 무역업, 품목, 세이프가드 조치 등 분야별로 규칙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부문별로 시행규정이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무역의 주체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한국은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무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업을 하기 위한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개인이나 외국인도 자유로이 무역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외무역의 주체로서 대외무역경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새로운 대외무역법의 실시는 모든 개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출입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대외무역법 제8조에서 보면 대외무역 경영주체의 정의는 ‘규정에 따라

공상(工商) 등기 또는 기타 사업 허가 수속을 거친, 신(新) 대외무역법,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은 먼저 공상(工商)부문에 등기를 거쳐야 경영권을 가진 개인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거래자의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한국기업들의 對중국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중국은 제한적인 수출입 시스템으로 대부분 중국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확대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인들도 자율적으로 수출입무역권을 취득하고 국제무역에 진출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중국의 수출입기업과 한국의 수출입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의류나 원단, 종이제품류, 금속제품류, 플라스틱제품류 등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에 대한 해외매수인들의 상대적 감소로 인한 피해를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은 중국이 이미 수출입무역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현재보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제품을 직접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있어서 수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의 주요 경쟁국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내 시장경쟁은 한층 격화된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셋째, 무역의 객체에 관한 관리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시행령 및 관리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상품, 기술 그리고 서비스로 규정하여 서비스부문까지 무역의 범위에 수용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서비스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무역 규정의 실체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역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중국은 대외무역을 권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촉진의 기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수출보험이나 무역금융, 관세환급 등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자칫 수출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WTO에서 수출지원제도로써 용인되는 것은 수출보험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본다면 다른 지원제도의 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21세기의 국제통상환경은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FTA, 관세동맹(CU)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도 다양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통상분야에서 국경이 갖는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인 통상의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통상 제도와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한국,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경우 ‘통상관련제도의 조화’는 반드시 고려될 협상이슈라 평가된다. 한편 중국은 2004년 대외무역관리제도를 개정하여 자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시장에서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對中 수출증가와 수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한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관련 여러 가지 규범은 중국의 무역구조에 영향을 주는 한편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대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무역규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교역의 확대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1세기는 지역주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 분야의 법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협력에 이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문성 외,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강용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법체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김병학·홍길중, 「대외무역과 전자무역 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4.
- 김성훈, 「무역창업시뮬레이션」, 도서출판 두남, 2004.
- 이승영,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반덤핑제도와 대한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춘삼, “중국 반덤핑제도의 규범체계”, 「산업경영연구」, 제27권 제1호, 2004.
- 엄광열외,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1.

한국무역협회, 「중국경제관계법령집」, 한국무역협회, 2003.

\_\_\_\_\_, “중국의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제도”, 「KITA 지역경제연구」, 통권 18호, 2004.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대한민국 대외무역법

대한민국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 대외무역관리규정

대한민국 관세법

대한민국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徐海寧·田春華 等, 「中國對外貿易」, 世界圖書出版公司, 1998.

Almstedt, Kermit and Patrick M. Norton, "China's Anti-Subsidy Regulations : The Latest Weapon in China's Trade Law Enforcement," *Topics in Chinese Law*, April, 2003.

Bagwell, Kyle and Robert W. Staiger, *The Economic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A : The MIT Press, 2002.

Falvey, Rod and Geoff Reed, "Rules of Origin as a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3(2), 2002.

Huang, T. W, "The Gathering Storm of Antidumping Enforcement in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Vol.36, 2002.